

정관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여수시 고소5길 38(고소동) 이순신신호
연박물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에 뿌리를 둔 이순신 정신
을 선양하고 교육함으로써 이 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워 밝고 건강한 사회
를 이루해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순신 정신의 교육을 위한 이순신학교의 설치 및 운영
2. 이순신 정신의 선양을 위한 기념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
3. 이순신 정신의 선양과 교육을 위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사업
4. 이순신 정신의 선양과 교육에 관련된 도서발간·배포 사업
5. 이순신학교 수료자 등의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에 관한 사업
6. 이순신장군의 후예의 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과 공익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여수이순신아카데미 수료자 및 수료예
정자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발의
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순신 정신의 교육과 선양의 의무를 다함과 동
시에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전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이순신 또는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자격,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13인 이내(이사장 1인과 총무이사 1인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자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에게도 유고가 있을 시에는 연장자인 이사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고문의 추대) 본 법인은 2인 이내의 고문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이 정관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법인의 최고의 결기관이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의 3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찬성한 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총회 불참 경우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포괄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고, 찬성한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회를 진행한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수입금)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본 법인은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이순신학교

제35조(학교장) ① 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이순신학교의 장은 이순신 정신의 교육과 선양에 앞장설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학교를 운영한다.
- ③ 학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학교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 ① 이순신학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규정을 둔다.

- ② 학교운영규정은 정관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학교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정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학교장의 심의요청사항을 심의한다.

제37조(강사와 보조강사) ① 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이순신학교의 강사는 여수이순신아카데미를 수료한 자로서 이순신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학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순신아카데미를 수료하지 않았으나 이순신 정신을 교육할 실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보조강사를 임면할 수 있다.
- ③ 임용된 강사와 보조강사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을 지급한다.

제38조(일반직원) ① 학교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한다.

- ② 일반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되, 보수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보칙)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인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8. 1. 8 재정

2022. 3. 15. 개정

2022. 9. 20. 개정